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F)
Exmouth House, 3/11 Pine Street, London, EC1R 0JH, UK
T: +44 (0)207 239 3310, info@ejfoundation.org
www.ejfoundation.org

EJF 정책 브리핑

2022.6

동 브리핑은 우리나라 국내 어업내 투명성, 추적성 및 외국인 어선원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EJF 의 정책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아래 정책 제안사항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도입하고 이행한다면, 우리나라가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국이자 교역국으로서 국제 수산분야에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동 문서는 EJF 가 해수부와 이전 공유했던 외국인어선원 인권 브리핑, 항만국조치협정(PSMA) 브리핑 및 EJF 의 투명성 헌장의 요약본입니다.

1. 국제노동기구 어선원노동협약 188(ILO C188) 비준

해양수산부의 2024 년까지 ILO C188 에 따라 국내 선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계획 발표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그 발표와 더불어 비준 목표 시점, 기간별 상세한 계획을 수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C188 비준 계획 발표는 전 세계 주요 수산물 시장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중요한 제스처(gesture)가 될 수 있습니다. 태국은 아시아 최초 비준국으로서 2019 년에 C188 을 비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대만과 같은 다른 주요 조업국가도 비준을 준비중입니다. C188 비준에 진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가 요구됩니다.

2. ILO C29, C87, C98 및 C188 에 따른 국내법 개정

해양수산부의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 시행 이후(2021 년 1 월), 어업 전반에 뿌리 깊은 관행인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침해와 차별적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개선사항이 미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EJF 와 공익법센터 어필(APIL) 등 NGO 의 선원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와 해수부 및 원양산업협회 주도의 근로 실태조사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1 년 이후에도 선박내 폭행 및 성추행, 송출업체의 악의적인 관행, 최대 72 시간의 과도한 근로 시간, 가족과 떨어져 18 개월 이상 해상에 머무르는 등 동일했습니다. 이에 EJF 는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 임금, 송출입 과정, 휴식 시간, 항해 기간, 항만 근로 검색 등 모든 기본 노동 조건을 C188 외에도 ILO C29 에 따른 강제 노동에 대한 정의, ILO C87 에 따른 외국인 어선원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ILO C98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따라 선원법에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잠재적 피해자 식별 및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의 근로실태조사 실시

선박내 실질적인 근로 여건, 어업 관행, 강제노동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정황 및 근거를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및 원양업계 주도의 근로실태조사시 잠재적 피해자 식별 및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식 채택이 시급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은 피해자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전제하에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어선원이 사실을 말할 경우, 선장 또는 상부로부터 보복이나 일방적 계약 종료, 해고,

EJF is a charitable trust registered in England and Wales (No. 1088128)
Patrons: Benedict Allen, Gordon Buchanan MBE, Lily Cole, Katharine Hamnett CBE, Sir Antony Gormley OBE, Tony Juniper CBE, Dame Rachel Whiteread DBE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F)
Exmouth House, 3/11 Pine Street, London, EC1R 0JH, UK
T: +44 (0)207 239 3310, info@ejfoundation.org
www.ejfoundation.org

재계약 기회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을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사관은 잠재적 피해자가 가능한 한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EJF 의 투명성 헌장을 수산 정책에 적극 반영

우리나라는 2013 년 이후 거의 10 년간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어업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이는 원양어업 허가 신청시 IMO 번호 요구(제 6 조, 동법 시행규칙 16 조, 별지 제 1 호서식), 어선위치추적장치(제 15 조), 엄격한 조업 및 전재 감시(동법 시행규칙 제 28 조의 2), IUU 어업에 연루된 자국민에 대한 제재 조항 (제 12 조의 2) 및 항만국 조치 협정(제 14 조 PSMA 이행에 관한 고시)의 비준을 포함합니다.

IUU 어업과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어선원 인권 침해 문제에 있어 "투명성 강화" 조치는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외부와 단절된 조업 환경, 불투명하고 복잡하게 엮여 있는 업계 구조로 인해 어선과 그 선상의 어획물, 시장 진출 경로 및 실질적 소유주 등 모든 관계자를 식별하고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EJF 투명성 헌장에 담긴 10 가지 조치를 수산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면, 불투명한 어업 환경을 관리 감독하여 IUU 와 관련 문제를 식별하고 근절하려는 해양수산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EJF 는 우리나라가 이미 e-정부 및 대국민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 체계에 익숙하며 탁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1] 이 선진 기술적 이점을 활용하여 아래의 투명성 조치를 적극 반영한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 **어업 허가 목록과 IUU 및 인신매매 등 관련 범죄에 연루된 개인 및 회사에 대한 제재 목록 공개 :**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연안국, 조업국(기국), 시장국 및 수산물 교역 파트너와 같은 모든 이해 관계자가 선박 및 운영자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어업 면허의 유효성을 교차 점검 할 수 있습니다.

- **전자 모니터링(EM)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적 여건 준비시 한국 원양어선에 포괄적이고 의무적인 적용 계획 발표:** 이 기술은 IUU 및/또는 인권 침해에 관련된 고위험 선박부터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어업 투명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주도 하에 EM 기술 및 분석 역량을 개발 및 육성할 수 있습니다.

- **IUU 고위험 선박을 분석하고, 항만검색관 교육 과정을 제도화하여 잠재적인 IUU 어업 및 인권 침해 정황을 식별하는 능력 향상**: 고위험선박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의 IUU 선박 목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양수산부 자체 고위험 선박 목록을 기반으로 국내외 항만 검색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항만 검색관은 항만국조치협정(PSMA) 및 ILO C188 에 따른 지식과 기술을 갖추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1] 한국 , OECD 디지털 정부평가 1 위 (2019), 유엔 전자정부조사 전자참여지수(EPI) 1 위, 전자정부개발지수(EGDI) 2 위를 차지(2020)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0502

EJF is a charitable trust registered in England and Wales (No. 1088128)
Patrons: Benedict Allen, Gordon Buchanan MBE, Lily Cole, Katharine Hamnett CBE, Sir Antony Gormley OBE, Tony Juniper CBE, Dame Rachel Whiteread DBE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F)
Exmouth House, 3/11 Pine Street, London, EC1R 0JH, UK
T: +44 (0)207 239 3310, info@ejfoundation.org
www.ejfoundation.org

- **실질적 수익 소유권에 대한 정보 공개**: 시민단체가 포함된 조사 TF 를 구성하여 해외 수역, 특히 아프리카에서 조업하는 실질적 소유주가 한국인인 어선에 대한 조사를 제안합니다. EJF 의 진행중인 조사에 따르면 기니 및 소말리아 국적의 선박이지만, 우리 자국민이 운영하는 선박들이 아프리카 국가 앞바다에서 불법어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어획물은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에 수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소유관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TF 에 의심스러운 선박을 면밀히 조사 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면, 선명을 바꾸거나, 해외 국적을 사용하여 불법어업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이며, 안전한 수입수산물을 위한 추적성 강화

2022 년 4 월 발간된 EJF 보고서 "The Ever-Widening Net"은 중국 원양어선의 IUU 와 인권 침해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더불어,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수역내 반복적인 불법 조업이 계속되고, 중국의 우리나라 대상 수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추적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이력 시스템을 통합한다면, 수산물 원산지 둔갑 문제와 중국 등 인근 국가 선박이 한국 항만을 '편의항'로 이용하여 우리나라 공급망에 불법 수산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내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어민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생산 정보를 제공하고 수산물 오염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추적성을 증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6. 한국 및 세계 수산물 소비자 대상 원스톱(One-stop)디지털 플랫폼 도입

우리나라는 이미 일부 어종의 공급망 추적이 가능한 법적 근거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JF 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제도(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 북태평양산 꽁치),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돔, 냉동꽁치 등 17 개 어종) 및 국내 수산물 이력제(굴비, 굴 등 2 개 의무 어종)상의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산물 공급망 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하기를 제안합니다. 이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은 아래 정보가 추가될 경우, 더욱 비용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영향이 큰 어종 및 IUU 고위험 어종(참치 등) 대상으로 어획증명 의무 확대
-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어획부터 식탁까지'의 정보를 추가합니다. 주요 데이터 요소는 생산자, 어획장소 및 기본정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에 대한 정보입니다.
- 국내 및 국제 소비자를 위해 이력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합니다.

/끝/

EJF is a charitable trust registered in England and Wales (No. 1088128)
Patrons: Benedict Allen, Gordon Buchanan MBE, Lily Cole, Katharine Hamnett CBE, Sir Antony Gormley OBE, Tony Juniper CBE, Dame Rachel Whiteread DBE